

**「고속도로망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4. 02.

**국 토 교 통 부
(도로투자지원과)**

목 차

I. 과업개요	1
II. 주요 과업내용	2
III. 과업 수행지침	5
IV.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식	13
V.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평가기준	14
<별첨1> 제안 기술능력평가 기준	17
<별첨2> 제안서 작성요령	19
<서식1~6> 제안서 작성 양식	20

I. 과업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고속도로망(민자,재정) 내 연계구간에서 불합리한 통행료 설정이 반복되면서 지속적 갈등 발생
 - 감사원('09) '재정·민자고속도로 연계구간 요금징수 불합리' 지적 이후 후발사업자가 부담하여 기본요금을 할인하도록 권고('12)
 - 그러나 할인 대상, 할인율, 분담방법 등 조정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 초래

 - 특히, 재정-민자 연계구간 통행료 결정 문제로 신규 고속도로 사업 착공과 개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편익 저하 우려
 - 후발주자가 기본요금 할인 손실을 전액 부담하도록 권고하면서 민자도로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사업 추진 지연
 - 재정-민자도로 간 연계구간 할인율 조정 협의가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 발생

 - 고속도로 연계구간 현황을 파악하고 통행료 조정 원칙을 정립하는 등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시급
- ⇒ 고속도로망 내 연계구간을 검토하여 문제구간을 선별하고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 유형화하고,
- ⇒ 국민 편익 확보 관점에서 공평·타당한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2. 용역개요

- 용역명 : 「고속도로망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구 분	전체	1차	비고
기 간	4개월	4개월	단년도
소요예산	60백만원	60백만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II. 주요 과업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①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사·분석

- 재정·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사·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 재정고속도로, 민자도로(국가, 지자체 민자도로)의 통행료 체계 분석
- 공익성, 공정성 등 통행료체계별 쟁점 도출

② 관련 법령·지침 및 유사 사례 검토

- 민간투자사업 및 통행료 관련 법·계획·기준 검토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결정원칙 검토
- 「유료도로법」 등 도로사업 통행료 결정원칙 검토 및 해석

-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도 등 유사 사례의 벤치마킹 가능성 검토
 -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SOC사업에서의 요금 할인제도 검토
 - 고속도로 연계구간 적용 가능성 검토

③ 고속도로 연계구간 현황 파악 및 문제유형 도출

- 고속도로 연계구간 할인제도 배경 및 연혁 검토
 - 고속도로 연계구간 할인제도 도입 배경, 변천 현황 등 검토
 - 고속도로 연계구간 할인제도 사례 검토
- 고속도로 연계구간 문제점 도출 및 유형화
 - 운영주체, 접속시점, 통행료 체계 등 현황 분석을 통해 연계구간 통행료 문제유형 정립
 - 문제 유형별 통행료 조정의 한계 및 저해요인 도출

④ 고속도로망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 문제 유형별 모델 선정 및 통행료 조정 효과 분석
 - 고속도로망 연계구간 조정대안 마련 및 문제 유형별 모델 설정
 - 사업의 편익, 요금 형평성 등 공익 관점에서의 타당성 검토
- 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설정 원칙 및 방법론 정립
 - 사업계획, 협상, 최초통행료 결정, 운영 등 통행료 결정 시점의 통행료 조정 원칙 및 방법론 정립

○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제도 도입방안 제시

- 고속도로 연계구간 통행료 할인제도 등 장기 운용방향 설정
- 신설·개통·운영 단계별 제도 도입방안과 선결과제 제시

2. 과업의 추진방식

- 관·학·연 등 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과업 결과에 반영
- 구체적인 일정 계획 및 회의 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자문결과는 발주청에 보고

3. 과업 설계변경 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
 - 기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 과업수행 시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기반하여야 하며, 관련 법정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나. 참여인력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수행자가 연구기관 선정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과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수행자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과업수행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 연구책임자는 도로, 교통분야 경력 15년 이상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자
- 주관기관은 연구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연구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과업수행 중 연구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주관기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 참여인력에 대하여 본 건 검토연구 참여기간 및 본 건 검토연구에서 여하한 사유로 제외되거나, 본 건 검토연구가 종료된 경우에도 본 건 검토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주관기관의 비밀 등을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의무 준수 약약을 징구하여야 함

다.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주관기관과 연구기관과의 해석상 차이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함

라. 전문가 자문

- 도로, 교통, 기술, 회계, 재무, 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과업 진행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비용에 포함된 도로, 교통, 기술, 회계, 재무, 법률자문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소요비용은 연구기관 부담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수행 과정에서 소속 인원이 비밀유지의무 준수확약서를 위반한 때

바. 저작권 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보고서 및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및 관련 권리는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모든 연구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은 정품 S/W를 사용해야 하며, 연구기관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소유권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사용권 등이 주관기관에 있도록 조치해야 함

사. 기타

- 과업진행에 대해 주관기관의 설명요구가 있을 시 과업 총괄 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주관기관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함

2. 설계변경 및 정산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때에는 예정 가격 작성 시 산출근거를 기초로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3. 보안 대책

- 가.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연구기관간의 공동으로 소유함
- 나.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다.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 라. 각 연구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연구보고서는 과업완료 시 주관기관에 전량 제출함
- 마.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바.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보고서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사.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아.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주관기관 전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자.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차.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카. 연구기관은 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본 과업이 중도에 해지되는 등 본 과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물건, 자료와 정보(복제물 포함)를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주관기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과. 연구기관이 본 검토연구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하.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연구기관이 부담함

거. 본 검토연구에 대하여 아래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를 준용하여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함

단계별	보안대책	비고
연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 연구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 배부처에 맞추어 연구보고서 발간 	
연구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수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 - 연구기관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보고서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 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각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연구보고서 발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에 대한 보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도 발간 과정에 발생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연구보고서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완료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전량 인수 확인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착수보고

- 연구기관은 착수일에 착수신고서와 함께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나. 중간보고

- 과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여야 함

다. 최종보고

- 최종보고(안)은 과업종료 15일 전까지 보고하고,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보고서 작성 ·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연구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주관기관들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기관은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수집 · 인용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그 출처를 명시하여 바인더로 정리 ·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함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 되거나 불명확할 경우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연구보고서의 원고는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해야 하며,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제작방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제작 진행 중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50부(A4)를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등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USB에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예정공정표

구분	과업기간			
	1	2	3	4
1. 고속도로 통행료체계 분석	██████████			
2. 관련 법령·기준 및 요금체계 사례 검토	████████████████████			
3. 연계 구간 현황 파악 및 문제 유형 도출			████████████████████	
4. 고속도로 연계구간의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				████████████████████
5. 보고회의	██████████ 착수 보고		██████████ 중간 보고	██████████ 최종 보고

Ⅳ.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함
-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며,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V. 제안서 제출 및 작성방법, 평가기준

1. 제안 조건

□ 일반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필요 시 용역기간 중 발주처의 과업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 특수조건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가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4. 제안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안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과 같음
-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과 같음

5.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파일 제출함
- 제안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규격 : A4용지, 정성제안서는 30매 이내로 작성 함
 - 제안요약서 : 10매 이내로 작성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함
(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제안요청서 상에 제시한 방안 외에 보다 나은 효과적인 구축방안이 있을 경우 제시 가능함

6. 제안서 설명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음(제안 설명회 개최 시 별도 안내)

7. 제안서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80% 및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결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8. 평가기준

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제출된 계획서 및 업체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

제안 기술능력 평가 기준

평가요소		체크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배점
1	기관평가	○ 연구인력 보유수	계량평가	주1)	10
2	과업 접근방법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비계량평가	주2)	30 (각10)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3	추진체계 및 일정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평가	주2)	20
4	투입인력 평가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계량평가	주3)	20 (각10)
5	결과 분석	○ 자료 분석방법의 전문성	비계량평가	주2)	20 (각10)
		○ 보고서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			
계					100

주1) 기관평가(10점)

- 연구인력 보유 수(10점) : 5인 이상(10점), 3인 이상(8점), 3인 미만(6점)
- * 공고일 기준으로 교통·법률·경제·경영·통계·회계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전공 석사·박사 및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 연구인력, 전문인력 보유 수

주2) 비계량 평가(70점)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10점)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10점)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10점)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20점)

- 자료 분석방법의 전문성(10점)
- 보고서의 적정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성(10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주3) 투입인력 평가(20점)

- 책임연구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10점, 비계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 도로 정책연구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 책임연구원 외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10점, 비계량)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비고
점수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 도로 정책연구 관련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적정성에 대해 평가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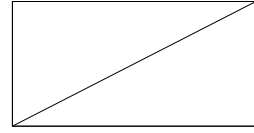
- 점수계산은 각 평가 요소별로 소수 이하 3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함
- 계량평가 주1), 주3)는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함
- 실적, 경력 등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은 이 기준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일로 함
-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의 경력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 1
I.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II.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서식 - 2
III. 사업 수행부문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연구의 중요성, 앞으로의 전망 등 기술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등 기술 주요내용별 세부내용 및 과업 수행전략 등 기술 과업수행 체계를 순서도로 기술 연구 추진일정 등 기술	
IV.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정기보고, 수시보고 등 - 단계별 검토회의 등	서식 - 3
VI. 기타	보안관리대책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추가 사항 등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고속도로망 연계구간 통행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

업체명 : (인)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본과업 연구진 총괄표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책 임 연구원		(ex)00.00.00.			
연구원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보유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외부 참여자는 제외)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연구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 역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금액	

- 주) 1. 【서식 5】 연구진 총괄표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만 작성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참여경력 기재

관련연구분야 인력보유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전공 또는 자격사항
		(ex)00.00.00.			

주) 연구인력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안자의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양하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6]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